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39667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김성민

변 론 종 결 2020. 10. 14.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모자 관계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공동으로 자동차부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 일부 부지에 원고들이 물류기지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부속합의서 포함)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양 당사자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된다. 본 계약의 기간 명시는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향후 체결될 별도의 계약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서면(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포함)에 의한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들은 사업장 부지의 사용을 위하여 예치보증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은 원고들의 목적에 의하여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보증금이고 향후 시설물이 준공되면 부지사용의 목적의 예치보증금으로 전환된다. 또한 원고들이 사용할 부지의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 원고들은 2018. 8. 28. 피고에게 예치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사업장 부지에 물류기지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자 2019. 4.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지하니 예치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12. 원고 B에게 ‘2019. 8.부터 매월 300만 원 ~ 500만 원씩 분할하여 1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투자금분할상환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같은 날 원고 B는 이메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6. 25. 피고에게 ‘분할 상환은 불가하니, 은행 용자를 얻어서라도 2019. 8. 20.까지 1억 원을 전액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19. 8. 16.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원고 B 내지 원고 A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아. 원고 B는 2019. 9. 2.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원고 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어 미룬다고 조금씩 갚는다고 했지만 저희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장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소장을 보냈고 가압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냈다.

자. 피고가 2019. 8. 16.부터 2020. 9. 15.까지 원고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4,2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은 원고들의 2019. 4.

26.자 해지 통보 내지 2019. 8.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치보증금 1억 원에서 이미 반환한 4,200만 원을 공제한 5,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1억 원을 2019. 8.부터 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2019. 8.부터 매월 300만 원씩 원고들에게 상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2019. 6. 25.자 내용증명과 2019. 9. 2.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분할 상환 제안을 거절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분할 상환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00만 원(5,800만 원 X 1/2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영민